

2026 이패스 객관식 민법 정오표(2026.04.03. 기준)

구분	정오사항	수정 전	수정 후
P18 문제03	해설/정답 수정	<p>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만,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는 없다.</p> <p>정답 ▶ ③</p>	<p>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. (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0다3231)</p> <p>정답 ▶ ③⑤(복수정답)</p>
P48 문제21	해설수정	<p>③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 약의자도 이를 할 수 있으며,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(17조 2, 3항)</p>	<p>③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 약의자도 이를 할 수 있으며,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(16조 2, 3항)</p>
P314 문제17	지문수정	<p>㉔ A와 갑의 부담부분이 1 : 9라고 할 때 A가 8천만 원을 B에게 배상한 경우 갑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7천만 원이다.</p>	<p>㉔ A와 갑의 부담부분이 1 : 9라고 할 때 A가 8천만 원을 B에게 배상한 경우 갑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7천2백만 원이다.</p>
P315 문제17	해설수정	<p>㉔ ○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,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,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다50896).</p>	<p>㉔ ○ 부담부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면 8,000 × 9/10 = 7200만원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,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,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다50896).</p>
P336 문제02	정답수정	정답 ▶ ④	정답 ▶ ③④(복수정답)
P424 문제14	보기수정	<p>⑤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합의해제·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</p>	<p>⑤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합의해제·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</p>
P512 문제02	해설/정답 수정	<p>③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,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736조).</p> <p>정답 ▶ ③</p>	<p>③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,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736조).</p> <p>정답 ▶ 정답없음</p>
P550 문제21	정답수정	정답 ▶ ①	정답 ▶ 정답없음(모두 맞는 지문임)